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신탁업자: 국민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피텔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자투자신탁

나.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)

다. 보관.관리기간: 10.09.09~11.09.08

라. 집합투자업자: 피텔리티자산운용㈜

마. 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:

대우증권, 미래에셋증권, 신한금융투자,

한국씨티은행, 외환은행, HSBC,

동양증권, 한화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 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11.05.02	투자신탁 비용추가	-	1.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의 예탁 및결제비용 3. 증권 등 자산의가격정보비용 4.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5.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
10.05.03	수익자공고	-	원본액 50 억 미만
11.01.17	종류형	E	C1~C5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| 해당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| 해당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

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| 해당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.교체.해임에 관한 사항

| 해당없음

7.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
부합하는지의 여부 | 부합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| 적정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

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| 공정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
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| 적정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
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
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
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
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|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
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| 해당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
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
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
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